

#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15
----------	-----

제출연월일 : 2007. 8.24.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 1. 제안이유

지속적인 기존도심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입지난 해소를 위하여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등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인용 법령을 정비함(안 제5조).
- 나.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부칙 제2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3) 입법예고 : 2007. 7. 27. ~ 8. 15. / 접수의견 없음

##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자치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를 “자치구”로,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위원회”를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중 “구청장”을 “자치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중 “위원회”를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로, “구”를 “자치구”로 한다.

조례 제2972호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 부칙 제2항중 “2007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제5조(기존도심 벤처기업 유치) ① ~ ② (생략)</b></p> <p>③기존도심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하되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u>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대상으로 한다.</p> <p><b>제6조(재정지원 기준) ①</b>시장과 <u>자치구청장</u>(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벤처기업의 육성과 기존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b>제8조(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 설치) ①</b>벤처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u>자치구</u>(이하 “구”라 한다)에 <u>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벤처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기타 <u>구청장</u>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위원회의 구성·조직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구 조례</u>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조례 제2972호)</p> <p>① (생략)</p> <p>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u>2007년 12월 31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p>	<p><b>제5조(기존도심 벤처기업 유치) ① ~ ② (현행과 같음)</b></p> <p>③----- ----- 「<u>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u>」----- -----</p> <p><b>제6조(재정지원 기준) ①</b>-----<u>자치구청장</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8조(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 설치) ①</b> ----- ----- <u>자치구</u>-----<u>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u> ----- ②<u>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u>----- 1. (현행과 같음) 2. ----- <u>자치구청장</u>----- ③<u>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u>----- -----<u>자치구</u>----- -----</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조례 제2972호)</p> <p>① (현행과 같음)</p> <p>②(유효기간) ----- <u>2017년 12월 31일</u> -----</p>

## 관계 법령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벤처기업"이라 함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함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부 칙 <제5381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도시형공장) 산업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